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감사담당관)

(　　제정) 2014.11.06 훈령 제 132호

(일부개정) 2021.02.18 훈령 제 1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사무국,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건소를 말한다.)은 그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밖의 부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①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8.>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개정 2021.2.18.>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금액)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한 경우 <개정 2021.2.18.>
2.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2.18.>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동일한 비위를 행한 경우 <개정 2021.2.18.>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1.2.18.>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거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서식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2014.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품수수공무원 징계 및 고발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훈령제164호, 2021.2.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